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치매관리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,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에 상위법 제명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치매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시행에 따른 성북구 치매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 설치·운영의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)
- 나.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 재정비(안제3조)
- 다. 센터의 위탁운영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 규정 신설(안 제4조제4항)
- 라.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용어 등 조문 재정비(안 제5조)
- 마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용·수익의 허가 취소 범위를 벗어나는 위탁의 취소사유(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) 삭제(안 제7조제1항제2호)

바. 그 밖에 용어 변경(협약→위탁, 수탁자→수탁기관 등) 및 띄어쓰기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, 제18조, 제20조(상세법령 별첨)

나. 합 의 : 해당없음

다. 예 산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15. 7. 2. ~ 7. 22.(20일), 의견제출 없음

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

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5)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6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7)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 및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치매지원센터”를 “센터”로, “하월곡동 46-1”을 “관내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치매환자의 발견·등록관리에 관한 업무
2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3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4.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·관리
5. 치매조기검진
6. 치매 지역사회 지원 강화 업무
7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4조의 제목 “(운영의 협약)”을 “(운영의 위탁)”으로 하고, 제4조제1항 중 “치매지원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하고자”를 “제1항에 따라 위탁할”로, “수탁기

관”을 “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협약”을 “계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탁 받는 관련기관”을 “수탁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탁기간은 협약 일”을 “위탁기간은 계약일”로, “재 위탁”을 “재위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의무)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.
2.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.
3.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치매지원센터”를 “센터”로, “수탁자”를 각각 “수탁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탁자는”을 “수탁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탁자가”를 “수탁기관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탁자는”을 “수탁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위탁·협약”을 “위탁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 「지역보건법」, 「서울특별시」를 “ 「치매관리법」, 「지역보건법」, 「서울특별시」로, “재무회계규칙」 등”을 “재무회계규칙」 등 관계법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 및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센터의 명칭은 성북구 치매지원센터(이하 “치매지원센터”라 한다)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6-1에 설치한다.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 -----“센터”라----- -----관내----- -----.</p>
<p>제3조(업무)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2. 조기검진시행 및 저소득층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3. 등록관리(치매, 치매고위험, 정상노인) 및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4. 부설 “인지건강센터”운영(인지재활 등을 위한 비 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시행) 5. 지역자원 강화(연계체계구축 	<p>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치매환자의 발견·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2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 4.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·관리 5. 치매조기검진 6. 치매 지역사회 지원 강화 업무 7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및 운영, 프로그램 보급, 인력 및 기술지원 등)

6. 지역주민 및 시설 종사자의 치매관련 이해도·요구도 및 사업만족도 조사

7. 기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업무

제4조(운영의 협약) ①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,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

2. ~ 4. (생략)

5.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재 위탁 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-----
센터-----
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-----
-----위탁받
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---계약-----.

1.-----수
탁기관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-----

③ 위탁기간은 계약일-----
-----재위탁-----
--.

<신 설>

제5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

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.

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

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의무) 수탁기관은

수탁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.

2.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.

3.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 및 감독) ① -----

센터-----

-----수탁기관-----

-----수탁기관-----

-----.

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의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4. (생략)

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비 지원)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·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은-----

-----.

제7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
---각 호-----

-----.

1. 수탁기관이-----

2. 삭 제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수탁기관은-----

-----.

제8조(운영비 지원) -----
-----위탁-----

-----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
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역
보건법」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
규칙」 등을 준용한다.

제9조(준용) -----
----- 「치매관
리법」, 「지역보건법」, 「서울특
별시-----
-----재무회계규칙」 등
관계법령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자치법규의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건강관리과장 이 응 철

※ 관련 법령

○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

제17조(치매상담센터의 설치)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(이하 “치매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2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3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4.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·관리
5. 치매조기검진
6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치매관리법」 제18조

제18조(비용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,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,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,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
- 1의2.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
- 1의3.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
2.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·홍보에 드는 비용
3.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·훈련에 드는 비용
4.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

제20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